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4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 
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총리<br>(인사혁신처 소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4. . .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출산·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(안 제14조)

-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
-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“둘째 자녀부터”를 “대상 자녀별로”로 한다.

다.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4조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제14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사

유로 근무 중인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4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4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,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. | ④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1.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·나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, 다만,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.  | 다.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|
| 1)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) 둘째 자녀 이후의 자녀  
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  
우

⑥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재직 연수에 포함한다. 다만,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재직연수에 전부 포함하되,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.

⑥

대상 자녀별로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44) 201 - 8297 |